

보도시점 2026. 8. 11.(화) (국무회의 종료 후 별도 공지) 배포 2026. 8. 11.(화) 08:00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

- 태양광 주거지역 200m, 풍력 주거지역 1,500m·도로 500m 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한 지방 조례는 상한 이내로 완화 의무 부과
- 신·재생에너지법 분리에 따라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수소 등 신에너지는 수소법 시행령으로 분리하여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첫째,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설정하고, 둘째,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던 신에너지와 재생energi를 분리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곳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에서 이격거리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방정부별로 편차가 매우 컸다. 이는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정부,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 설정 시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정할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1,500m 이내,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으며,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두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산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후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이격거리가 모든 지방정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이보다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방정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완화해야 하며,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는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방정부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기후부는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안 취지에 맞춰 법 시행일 전까지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 (예시) (A지방정부 조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로 이격거리 규정
→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로 조례 개정 필요
- (B지방정부 조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로 이격거리 규정
→ 조례 개정 불필요

아울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이러한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시행령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가 정비된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세부내용.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정원 (044-203-5360)
		담당자	사무관 조영훈 (044-203-5364)이격거리 사무관 원종필 (044-203-5366)신재생분리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안 제27조의3 신설)**

<재생에너지법 이격거리 관련 개정 내용>	
○ (제27조의3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이격거리 적용 원칙적 금지	
- 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대통령령에 위임된 지역은 예외적 허용	
○ (제27조의3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이격거리 적용기준(상한)의 대통령령 위임	
○ (제27조의3 제3항)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이격거리 미적용	

- (이격거리 예외적 허용)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영 제27조의3 제1항)
- (이격거리 적용기준(상한)) 태양광, 풍력에 대한 기준 설정(영 제27조의3 제2항)
 - (태양광)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200m 이내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미적용
 - (풍력)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1,500m 도로로부터 500m 이내
 - ※ 풍력의 경우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로 하한 설정
-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관한 사항(주택·도로의 기준, 이격거리 측정 방법 등)은 기후부 고시에서 규정(영 제27조의3 제3항)

<현행>		<개정안>	
지방정부별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조례)		법령에 이격거리 상한 마련(법령)	
① (태양광) 100m~1,000m로 다양 ② (풍력) 100m~2,000m로 다양		⇒	
		① (태양광) 주거지역 200m 이내 ② (풍력) 하한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상한 주거 1500m 이내 도로 500m 이내	

□ **지방정부 조례별 개정여부 예시(태양광, 주거지역 기준)**

	A지방정부	시행령 기준	B지방정부	C지방정부
현행	300m (주택 5호)		100m (주택 5호)	이격거리 無
	↓		↓	↓
개정	200m 이하로 개정 필요 (200/150/100 등)	200m (주택 5호)*	개정 불요	도입 불요

* 태양광 발전설비로부터 200m 이내에 주택이 5호 이상 존재 X

< 재생에너지법 및 시행령 개정안 비교표 >

재생에너지법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생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 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내에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이상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없을 것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부터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내에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이상의 주택이 없을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부터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가 위치하지 않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